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지침

제정 2025. 8. 29.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고,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렴시민감사관”이란 공단이 수행 중인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공단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 제2장 구성 및 위촉

**제4조(구성 및 자격)**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3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양천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자
-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기업의 부서장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 사회적 신망이 높고 공단 업무 분야에 관한 학식·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그 밖에 이사장이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할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1.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
2. 정치인 또는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공단의 전·현직 임직원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이사장이 공개 모집 또는 추천을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임으로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청렴시민감사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이사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2. 위촉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수행을 기피 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5. 감사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 등을 누설하였을 경우
6.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7.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3장 직무 및 권한

**제7조(직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단의 주요 사업(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과 부패 취약분야(사용허가, 인사채용 등)에 대한 감시·조사·평가
2. 부패예방, 청렴성 제고 등 부패관련 제도 개선 건의·요구
3. 부패관련 민원 신청·접수 및 이에 대한 조사·분석
4. 반부패 및 청렴 정책에 관한 자문, 의견제시
5. 반부패 및 청렴 관련 교육
6. 시정요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이행 실태 확인·점검 등)

7. 고충 등 민원 처리 및 이와 관련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 권고·건의
  8. 기타 이사장이 공단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 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수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4. 감사원, 행정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사항 또는 법인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독립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원 및 직원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면담을 요청받은 임직원은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공단은 청렴시민감사관의 독립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감사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감사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해당 감사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본인이 해당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법인이 해당 감사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② 제척 사유가 있거나 감사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당사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청렴시민감사관 스스로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4장 직무수행

**제10조(제보 등의 처리 절차)**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독립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법률 및 규정 등을 어긴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전화, 서면, 메일 등을 활용하여 제보, 제안, 시정 건의(이하 ‘제보 등’ 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 등을 접수 받은 경우 확인된 자료를 사전 분석 후 감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여 이사장에게 보고를 한 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무 및 서약)**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성실한 자세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비밀),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이 회의 참석, 감사·조사 참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자문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 관련)

제 - 호

## 위 축 장

성 명 :

귀하를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의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 00. 00. ~ 20 . 00. 00.)

20 년 월 일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0 0 0 (직인)

#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공정성, 독립성, 비밀 보장의 원칙을 바탕으로 공단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공단의 업무에 대해 어떠한 외부의 간섭이나 부당한 지시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3.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얻게 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사적인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며, 공단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일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겠습니다.

이 서약서의 모든 내용을 충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 (서 명)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일지

일 시	
장 소	
주 요 활동내역	
조치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상황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렴시민감사관 :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날인)</span></p> <p>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p>	

## 청렴시민감사관 [시정·건의] 사항

제 목	
시정·건의 사 항	<p>&lt;현황 및 문제점&gt;</p> <p>&lt;개선내용&gt;</p> <p>&lt;기대효과&gt;</p>
지원업무 수행자 의견	
<p>위와 같이 시정 및 건의사항을 제출하오니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렴시민감사관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날인)</p> <p><b>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b></p>	